

해결하며 몇 가지 신형 가속기와 방사 화공 신제품을 하루속히 시장에 내놓으며 방사 가공과 핵 의학 검사 및 핵 약물 공급의 새로운 서비스 모식을 초보적으로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출처 : http://news.xinhuanet.com/st/2006-01/15/content_4054197.htm

이것이 알고 싶다

방사선발생장치 교체

◎ 질 의 : ***

1. 방사선발생장치의 노후로 기존에 허가된 장비와 같은 모델, 같은 용량, 제작회사, 사용장소도 동일한 경우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사항은 단지 s/n만 바뀌게 되는 경우인데...
2. 또 위의 경우 튜브만 교체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엔 선원의 모델, 제작사, 방사능량이 같은 경우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교체하면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교체된(폐기된) 동위원소만 판매사가 가지고 가거나, 위탁폐기를 하면 된다고 해서요.

◎ 답 변 : 김경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규제부 방사선량규제실)

귀사의 경우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교체사용하기 위해 사용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03년에 도입된 방사선기기설계승인제도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설계승인을 득한 장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경과규정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장비에 대해서는 동 규정 시행당시 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왔구요....

다만 귀사와 같이 장비를 교체하게 되면 신규로 도입하는 장비는 방사선기기설계승인을 받은 기기만 가능하므로 방사선기기설계승인된 장비인지의 여부 및 사용신고대상 장비인지 허가대상 장비인지의 여부를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를 통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 또는 허가심사시 재확인합니다.

튜브만 교체시에는 동일 성능의 튜브로 교체시 별도의 인허가 조치는 불필요 합니다.